



##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경기 안성 가금농가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1. 관련: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4840('21.1.31.)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4589('19.1.31.)호
2.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산란계**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H5형 확인)이 발생함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방역조치

#### □ AI 방역대책상황실 운영(공통)

- 고병원성 AI 확진에 대비하여 관련 기관, 협회 및 전국 지자체는 AI 방역상황실 24시간 운영 및 보고체계 구축

#### □ 의사환축 발생 농장 소재 시·도 및 시·군·구(경기도)

- 검출 농장에 대한 조치
  - 해당 농장의 사육가금 등 고병원성 AI 감수성동물은 즉시 살처분 명령 조치
  - 농장주(가족 및 직원 포함), 차량, 가금 및 물품에 대한 이동제한 실시
- 의사환축 발생 농장 및 역학농장의 가축 이동사항 및 출입자·출입차량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후 방역조치 대상을 선정하여 농식품부·검역본부 및 관련 시·도, 시·군·구에 보고(통보)
  - 역학조사 과정에서 '가금상하차반', '백신접종팀'의 해당 농가 출입(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인원과 이용된 차량 관할 소재 지자체에 즉시 통보
    - \* 해당 지자체는 '가금상하차반', '백신접종팀'이 의사환축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및 접촉 당시 의복·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방역감시과)로 통보
- 차단방역 강화조치
  - 의사환축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 설정
    - \* 해당농장 중심 반경 10km 이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및 신속한 예찰

- 닭 등은 간이진단키트 검사, 오리·거위·기러기는 정밀검사(PCR)
- \* 방역대 내 감수성 가축 사육농가 현황 파악 후 우리 부 제출 및 임상예찰 실시
- 3km 방역대 내(관리지역~보호지역) 가금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명령서[붙임 2] 즉시 사전 발부
- 방역대가 타 지자체와 겹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속히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단방역 실시
- 방역대 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 실시 및 관리 강화
  - \* 시·군, 계열화사업자 등을 통해 계열농가 및 개인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 후 보고
- 살처분·매몰 등 현장방역조치 대비 인력 및 장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소와 사전 협의하여 항바이러스제 확보
- 방역지역 설정에 따른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장소 설치 등 고병원성 AI 발생에 준하는 방역조치 즉시 시행
- 의사환축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일일 소독 실시 및 관리 강화\*\*
  - \* (닭 등) 간이진단키트 검사 / (오리·거위·기러기) 항원검사(PCR)
  - \*\* 시·군, 계열화사업자 등을 통해 계열농가 및 개인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 후 보고
- 의사환축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료공장은 즉시 세척·소독 및 건조 후 환경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운영 재개
  - \* 사료 운송차량의 운전자석 발판, 차량 바퀴 및 머드가드 포함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실 운영 및 방역관련자 비상대기 조치
-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에 대비하여 발령체계 점검
- 방역대 내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는 수매·도태 추진
- 가금 사육농가 방사 사육 금지 지도·홍보 철저

#### □ 경기도 이외 지자체

- 의사환축 발생 지역 접경 지대는 이동통제 초소 설치
- 의사환축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일일 소독 실시 및 관리 강화\*\*
  - \* (닭 등) 간이진단키트 검사 / (오리·거위·기러기) 항원검사(PCR)
  - \*\* 시·군, 계열화사업자 등을 통해 계열농가 및 개인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 후 보고
- 의사환축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료공장은 즉시 세척·소독 및 건조 후 환경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운영 재개
  - \* 사료 운송차량의 운전자석 발판, 차량 바퀴 및 머드가드 포함
- 의사환축 발생농장을 출입한 것으로 확인된 '가금상하차반', '백신접종팀' 관할 지자체는 '가금상하차반', '백신접종팀'이 의사환축과 마지막으로 접촉

한 날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및 접촉 당시 의복·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방역감시과)로 통보

- 관할지역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신속하게 예찰 및 임상검사 실시
- 관할 소규모 농가 및 방역취약농가에 대해 전화, 현장 방문 등을 통한 방역실태 지도·홍보·점검
  - 방역대 내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는 수매·도태 추진
  - 가금 사육농가 방사 사육 금지 지도·홍보 철저
-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에 대비하여 발령체계 점검

#### □ 농림축산검역본부

- 중앙역학조사반을 급파,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의무 위반사항 정밀 조사
  - 역학조사 시 농장 사육환경·방역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부 및 해당 지자체에 공유하고, 방역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지자체에 이첩
  - KAHIS 축산차량 출입정보 등을 활용해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위험도 분석' 결과를 우리 부 및 지자체에 신속히 제공하여 사전방역 조치에 활용토록 조치
- 중앙기동점검반 점검 실시
  - 의사환축 발생 지역 가금농가의 야생조류 차단, 구서, 살처분 사후 관리, 이동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가금농가 소독실태(공동방제단 및 지자체 소독실태 포함)를 상시 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 기동방역기구 파견
  - 대상 지역: **경기 안성시**
  - 주요 임무: 방역기술 지원, 살처분 인력 AI 방역 교육, 소독장비 운영,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및 사체처리 작업 등 기술자문, 현장 소독 및 통제초소 운영실태 등 점검 및 방역조치 등
- 축산차량 이동현황 및 방역지역 현황 등 보고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실 운영 철저(비상연락망 구축 등)

####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방역 인력 및 물자(항바이러스제 공급 등)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

#### □ 국방부·경찰청

- 시·군·구에서 현장 방역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지자체 가축방역관의 감독 하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의사환축 발생 농장의 가축 및 생산물의 농장 밖 이동을 금지하고 외부인 및 차량 등의 진입 제한
  -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부

득이 허용하는 경우 소독·기록 관리 철저

- 의사환축 발생 농장의 진입로 소독(생석회 살포 등)
- 의사환축 발생 지자체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 강화
  - \* 검출농장 반경 10km 내 가금농가는 '21.2.1.(월)까지 전화예찰을 완료하고, 방역대 해제 시까지 매일 실시

#### □ 농협경제지주

- 의사환축 발생지역 내 가금농가 소독 실시(공동방재단)
  - 방역대 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의사환축 발생 시군 내 모든 가금농가로 확대하여 실시

#### □ 관련 협회(단체 포함) 및 소속 농가

- 중앙 및 지방정부, 관련 단체의 긴급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
  -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에 대비하여 가금 사료 확보 등 대비 철저 홍보
- 전국적인 축산농가 모임, 행사 등 금지
- 관련 협회에서는 회원 등을 대상으로 및 매일 임상검사 실시 후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1588-4060, 9060)토록 전파
-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 강화 및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이동통제 적극 협조 홍보
- 금번 의사환축 발생지역을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가금 농가 방문 자제 및 방문 이 불가피할 경우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 나. 추가 방역강화 조치사항

#### □ 의사환축 발생지역(시·군·구) 관내 전통시장의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 기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 대상: 발생지역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
  - ※ 해당 지자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관내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에 대한 사용제한 명령서 발부

#### □ 방역대 내 소규모 농가(100수 미만 방사사육 등) 가금 구매·도태 적극 실시

- 붙임 1. 관련 공문 각 1부  
2. 예방적 살처분 명령서(양식; 준수사항 포함) 1부. 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검역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축산환경자원과장, 방역정책과장, 구제역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역학조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 농촌진흥청장(재해대응과장), 국방부장관(재난관리지원과장), 행정안전부장관(보건재난대응과장), 환경부장관(생물다양성과장),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정책과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질병연구팀장), 국립생물자원관장(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장), 질병관리청장(신종감염병대응과장), 국립축산과학원장(가축질병방역과장), 경찰청장(치안상황관리관),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농업축산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한수의사회, 한국관광공사사장,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장, 가축유기질비료협동조합장, 농협경제제주 친환경방역부

주무관    **강호성**    사무관    **김준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장    전결 2021. 1. 31. 이기중

협조자

시행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1. 1. 31.)    접수    2347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57    팩스번호 044-863-9210    / 1zzibang@korea.kr    / 대국민 공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